**NexBeSign 통합인증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 (한신정보기술 제휴사용)**

**1. 서비스 이용 정보**

|  |  |  |  |
| ---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법인등록번호** |  |
| **회사주소** | 우편번호 00000) | | |
| **서비스명** | | *인증 앱에 표시될 서비스명 기재*  *(미기재시 회사명으로 노출)* | **서비스 도메인** |  |
| **담당부서명** | |  | **담당자명/직위** |  |
| **연락처/이메일** | | / | **고객센터번호** | *인증사업자로 문의사항이 접수될 시 해당 번호가 고객에게 안내됩니다.* |
| **개발담당자명/연락처** | | **한신정보기술 / 043-278-2700** | **개발담당자 이메일** | **cosrl@hanshinit.co.kr** |

※. 담당자명, 연락처/이메일은 이용하는 인증사업자에 제공됩니다.

**2. 서비스 결제 정보**

|  |  |  |  |
| --- | --- | --- | --- |
| **결제부서명** |  | **담당자명/직위** |  |
| **연락처** |  | **세금계산서 수신**  **e-mail** |  |
| **서비스 개시일 (과금시작일)** |  | **입금자명/입금예정일자** |  |

※ 서비스 개시일(과금시작일)은 서비스 신청서 접수로부터 2주 후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운영키 발급기간 2주 소요)

**3. 이용 서비스 선택** (계약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서비스** | | | **■간편인증 ■ 전자서명 ■ 본인확인** | | | | **구 분** | | | **기본료(VAT별도)** | **기본제공건수** | **초과수수료(VAT별도)** | | **NexBe Sign 통합인증 서비스** | **년 선납형** | □ 소형 | 300,000원 | 10,000건 | 35원 | | □ 중형 | 600,000원 | 20,000건 | 35원 | | □ 대형 | 1,000,000원 | 35,000건 | 35원 | |

상기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별첨의 이용약관 숙지 및 서비스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  |  |  |  |
| --- | --- | --- | --- |
|  | 법인명 : |  | 넥스원소프트(주) |
|  | 주소 : |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58  3층 303호(논현동, 율암빌딩) |
|  | 대표이사 : (날인) |  | 대표이사 최 덕 훈 |

**[제출 서류]** 서비스 신청서(이용약관 포함) 직인날인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제 출 처]** (06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3층 303호(논현동,율암빌딩), 넥스원소프트 영업기획실 담당자 앞

[별첨]

**NexBeSign 통합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넥스원소프트”가 “NexBeSign 통합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넥스원소프트”가 각 “인증사업자”와 별도의 인증서비스중계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기관”에게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이용자”가 “이용기관”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본인확인,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각 “인증사업자”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인증사업자”가 보유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인증사업자”라 함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 내지 시범사업자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회원으로서 “이용기관”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이트”라 함은 “이용기관”이 운영하는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컨텐츠, 포인트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포함한다.
   5.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 본인에 대한 인증 및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휴대폰전화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타 “인증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값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6. “제공대행업무”라 함은, “넥스원소프트”가 각 “인증사업자”의 서비스를 대행하여 “사이트”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의미하며, 추가로 제공하는 컨설팅, 구축, 운영 및 정산 서비스가 포함된다.
   7. “컨설팅”이라 함은 신규 “사이트”에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서비스” 이관 및 고도화 요청 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넥스원소프트”가 진행 방향을 가이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구축”이라 함은 “넥스원소프트”가 “사이트”의 상황에 맞게 각 “인증사업자”들의 인증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아키텍처 및 API를 제공하고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9. “운영”이라 함은 “넥스원소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정기 업무 및 수시로 발생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정산 서비스”라 함은 각 “인증사업자”의 과금 체계 및 정산 업무를 “서비스” 내 “시스템”을 통해 “이용기관”에 통합 청구하는 업무 일체를 의미한다.
   11.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넥스원소프트”가 개발∙구축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12. “서비스 이용료”(이하 “수수료”)라 함은 “넥스원소프트”가 ”이용기관”의 “사이트”와 “이용자”에게 본 약관에 따른 “제공대행업무”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이용기관”이 “넥스원소프트”에게 지급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13. “입력창”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관련약관 등을 입력,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작된 웹사이트, 프로그램, Application 등을 말한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이용기관”의 의무와 책임)**

1. “이용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기관”의 시스템 등을 그 자신의 비용으로 구축, 운영,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2. “이용기관”은 사업자 정보 및 시스템 등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넥스원소프트”에게 해당 변경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용기관”은 “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기관”은 “넥스원소프트”의 사전 허락 없이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넥스원소프트”가 제공한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등을 임의로 수정, 변경,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기타 “이용기관”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넥스원소프트”의 의무와 책임)**

1. “넥스원소프트”는 “서비스” “제공대행업무”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그 자신의 비용으로 구축, 운영,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2. “넥스원소프트”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에게 관련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에 대한 책임 제한)**

1. “넥스원소프트” 및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1. “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기관” 자격의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의 예고 없는 중단
   2. “인증사업자”의 “서비스”의 확인을 요청하는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용자” “본인확인정보”의 변경에 따른 정보 불일치 등의 사항
   3. “이용자”의 “인증사업자”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이용자”의 생년월일 위변조, 제3자 제공, 본인의 “본인확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위한 난수의 누설, 유출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의 부정확성, 오류
   4. “본인확인정보” 자체의 일치 여부 확인 이외 다른 사유로 발생하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의 불편, 장애 등

**제6조 (“서비스” 제공시간 등)**

1.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이다.
2. “넥스원소프트”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기점검,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기관”에게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넥스원소프트”는 “이용기관”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다.
3. “넥스원소프트”의 귀책사유 없는 “인증사업자”의 장애 등의 사유로 “넥스원소프트”의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대행업무”가 중단된 경우 “넥스원소프트”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 “넥스원소프트”는 “인증사업자”와 신속히 협의하여 “서비스”의 재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협의 상황을 “이용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이용기관”이 본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이상 “서비스”의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넥스원소프트”는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및 정산)**

1.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이용요금은 [NexBeSign 통합인증서비스 신규가입 제휴신청서] 에서 정한다.
2. “넥스원소프트”는 “수수료”를 월납형 계약 일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이용기관”에게 청구한다.
3. “이용기관”이 제7조에 따라 “넥스원소프트”에게 제공받은 정산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양사 검토 후 이견이 확인될 경우, 익월 청구요금에서 과다청구분을 상계 차감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과다청구분을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4. “이용기관”은 “넥스원소프트”의 청구를 받은 해당 월의 30일까지 “넥스원소프트”의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변경 등)**

1. 본 약관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 1개월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의 효력은 “NexBeSign 통합인증서비스 신규가입 제휴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일자의 날짜부터 발생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등)**

1.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 법령의 개정,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서비스”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한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기관”이 본 서비스 계약 체결 또는 최종 거래 발생 이후 3월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9. “이용기관”이 “수수료”를 정산자료에 고지한 납부일내에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2. 전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중단 의사의 표시가 일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를 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시점으로 간주하며, “넥스원소프트”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수수료”를 “이용기관”에게 청구하고, “이용기관”은 “넥스원소프트”의 청구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된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제10조 (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3. 양 당사자는 업무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상대방의 영업에 관한 자료,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담보의 제공)**

1. 본 약관의 위반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증사업자”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유는 “넥스원소프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 한다.
2. “넥스원소프트”는 “이용기관”에게 본 약관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 등과 관련하여 “넥스원소프트”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담보 금액, 담보 제공 방법, 담보 면제 여부, 기간 등 세부 조건은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12조 (양도 등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 (불가항력)**

본 약관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부칙**  본 계약은 서비스의 신청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계약서 또는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